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. 3. 10 조례 제2948호 일부개정 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)

일부개정 2024. 3.15 조례 제309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 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생리용품"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,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4. 3. 15]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 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24. 3. 15〉
 - 1. 「주민등록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
 - 2. 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
 - 3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
 -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 권[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

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

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- 1.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
- 2.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7조(중복지원 금지)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
 - 2.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
 - 3.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
 - 4.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 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. 3. 15 조례 제309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